

(붙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방송통신위원회

1. 개정이유

개인위치정보를 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 정보 중개 사업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에 있어, 양수 및 합병 후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신고 기한을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 다.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허가·신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를 면제(안 제12조의2 및 안 제19조의2 신설)

- 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본인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즉시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즉시 통보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즉시 통보 규정 완화(안 제19조 제3항 단서 신설 및 제4항)
- 마.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법조문 정비(안 제29조제1항 단서)
- 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의 동등제공 관련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 사. 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 아. 과도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1) 양벌규정을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전환(안 제42조)
 -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정 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법정 휴지기간 초과 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안 제8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4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3)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칙을 완화(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

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치정보를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제4호중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를 "표준화에"로 하고 동 조제4의2호, 제4의3호,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의3.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의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서비스 개발·보급 등 위치정보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중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여는 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를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7항중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를 “받은 자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중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제1항 본문중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휴지하려고 할 때에는”으로,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를 “휴지하려고 하는 날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를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개인위치정보만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를 “폐지하려는 날의”으로,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만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합병·분할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본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고 할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만을 말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만을 말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제공하려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허가 등의 적용 예외) ①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 미취급자”라 한다)에게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미취급자를 정하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삭제
 3.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4. 제16조제1항의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4의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개

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6.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7.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위치정보 등의 보호

제3장 제1절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5조제1항 본문중 “동의를 얻지”를 “동의를 받지”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라”로, “요청이 있거나”를 “요청을 받은 경우나”로, 동조제2항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동조제3항중 “장치가 부착된”을 “장치를 붙인”으로, “대여하는 자는”을 “제공하는 자는”로, “부착된”을 “붙어있다는”으로, “대여받는 자에게”를 “제공받는 자에게”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을 “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로 한다.

제17조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려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은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통신단말장치를 작동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26조 제2항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일정한 주기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수단으로 알릴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4.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즉시 알릴 수 없는 경우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내역의 기록·보존)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존상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를 제7조제3항과 제10조제3항으로 각각 이전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한다.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인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개

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만을 말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제19조제4항 및 제24조는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제1항의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는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2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4장(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만을 말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

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5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①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및 분석
2.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그 외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5조의3 (위치정보의 동등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치정보의 접근 및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의3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관계물품·서류 등 (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당사자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당사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8조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

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삭제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들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5의2.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정보의 접근 및 이용 요청을 거절한 자

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자

5의4.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정보를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한 자

제42조 본문중 “제39조 내지 제41조의”를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3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

을 변경한 자(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붙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1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13.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 1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 1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 1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17의2. 제37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7의3. 제3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7의4.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 3.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동 항제12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

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⑧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⑨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8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세체납처분의 예"는 각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치정보</u>"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u>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u> 2. "<u>개인위치정보</u>"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u>개인위치정보주체</u>"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u>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u>"라 함은 <u>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u>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치정보</u>"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u>전기통신기본법</u>」 <u>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u> 2. "<u>개인위치정보</u>"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u>개인위치정보주체</u>"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u>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u>"란 <u>개인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개인위치정보</u>

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는 것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

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치정보를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

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공목적에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공목적에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화에 관한 사항

<신 설>

4의2.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4의3.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의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서비스 개발·보급 등 위치정보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⑥제1항의 허가의 신청요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

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과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과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과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과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 <신 설>

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고 할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지하려고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만을 말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만을 말한다)를 파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상속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분할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

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 <신 설>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본다.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고 할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

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만을 말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만을 말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제공하려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의2(허가 등의 적용 예외)

①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 미취급자"라 한다)에게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미취급자를 정하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폐지·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삭 제>
3.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6.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7.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4. 제16조제1항의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4의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6.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7.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의 산정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

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

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 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장 위치정보 등의 보호

제1절 위치정보의 보호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을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붙인 물건을 제공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어있

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다는 사실을 제공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 제>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 니 된다.

<신 설>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생 략)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조치의 내용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7조의2 (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현행과 같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생략)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

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려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은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

<단서 신설>

<신 설>

정보주체가 통신단말장치를 작동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26조 제2항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일정한 주기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수단으로 알릴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4.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즉시 알릴 수 없는 경우

④ (생략)

<신 설>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내역의 기록·보존)

①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p>2. (생략)</p> <p>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p> <p>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2. (현행과 같음)</p> <p>제22조 <삭제></p>
<p>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p> <p>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 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 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p>	<p>제23조 <삭제></p>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 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 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인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

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

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만을 말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제19조제4항 및 제24조는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생략)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후견인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

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① (생략)

②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생활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정신질환자사회복귀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제1항의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는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

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만을 말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요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①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5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①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

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 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

업자는 제29조제5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 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

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① (생략)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계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2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및 분석
2.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그 외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5조의3 (위치정보의 동등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사업자들에게 위치정보의 접근 및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들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③ 위치정보사업자들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위치정보심의위원회) 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공 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하에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치정보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36조 (위치정보심의위원회) <삭제>

2. 위치정보의 지원시책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의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4.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와 관련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2.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이용

자를 대표하는 자 및 위치정보
에 관한 민간전문가 중 방송통
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
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
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
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7조 (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
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
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제37조의2 (시정명령) 방송통신위
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
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의3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관련 당사자에게 관계물품·서

류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
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
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당사자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당사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
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
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
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
야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위
원회는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

제38조 (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위
원회는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

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p>자</p> <p>5. <u>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u></p>	<p>5. <u>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u></p>
<p><u>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u></p>
<p>1. <u>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u></p>	<p>1. <삭 제></p>
<p>2. <u>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u></p>	<p>2. <u>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u></p>
<p>3. <u>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u></p>	<p>3. <u>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u></p>
<p>4. <u>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u></p>	<p>4. <u>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u></p>

5.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삭 제>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
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5.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정보발송을 거
부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4의2.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위
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
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
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
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정보발송을 거부한 자

5의2.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
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정보의 접근 및 이용
요청을 거절한 자

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
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정보 제공을 중단하
거나 제한한 자

5의4.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
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정보를 차별적인 대
가와 조건으로 제공한 자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p>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p> <p><신 설></p> <p>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p> <p>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p> <p>3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p> <p>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p> <p>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8조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p>
---	--

<p><신 설></p> <p>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p> <p>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신 설></p> <p>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p>	<p>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p> <p>8.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p>	<p>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붙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p>
<p>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 관명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p>	<p>1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 관명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p>
<p>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p>	<p>1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p>
<p>7.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p>	<p>13.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p>
<p>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삭 제></p>
<p>9.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p>	<p>1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p>
<p>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p>	<p>1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p>

<p>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p> <p>1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p> <p>12.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③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용 또는 제공한 자</p> <p>1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p> <p>1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17의2. 제37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17의3. 제3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17의4.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p> <p>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p>
--	--

<신 설>

④제1항, 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동항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제2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동항제12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p>과태료는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⑨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세채납처분의 예"는 각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지방세채납처분의 예"로 본다.</p>	<p><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⑨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8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세채납처분의 예"는 각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지방세채납처분의 예"로 본다.</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연 락 처	(02) 750 - 2771